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39호 2017. 11. 1.(수)

【조 례】

【규 칙】

제530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7-1767호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17-1789호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24

제2017-1790호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6

제2017-1791호 임대조건 공고 28

제2017-1809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17-1811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제2017-1828호 공주시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고 시】

제2017-177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3

제2017-17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47

제2017-18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4

제2017-18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56

제2017-18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8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1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10. 25.)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11월 1일

공주시 규칙 제530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 사용신고) 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시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단가·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1조제2호의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전

력당 출수량×펌프효율×1개월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단위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제5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 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

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육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제7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100분의 100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부과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부서는 준공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요청 또는 협약에 의하여 4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재처리수량에 해당하는 요금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대상으로

서, 감면금액 또는 감면비율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가.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나. 불명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의 하수처리장

라.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납입독촉)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

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에서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2조의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4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3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제4조제2항 관련)

구 경		최 대 출수량 (m ³ /분)	표준출수 (m ³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 (inch)			최 대 (m ³ /시간)	표 준 (m ³ /시간)
20	3/4	0.03	0.025	1.8	1.5
25	1	0.05	0.05	3.6	3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50	2	0.26	0.2	15.6	12
65	2-1/2	0.45	0.3-0.4	27	18-24
70	3	0.62	0.5-0.53	37.2	30-31.8
100	4	1.20	0.35-1.1	72	51-66
125	5	1.93	1.4-1.7	114	84-102
150	6	2.70	2.1-2.6	2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0	9-11	720	540-660
350	14	12	14	960	840
400	16	16	17-20	1,260	1,020-1200
450	18	18	25	1,620	1,500
500	20	20	30	1,980	1,800

[별지 제5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11조제4항 관련)

과 목				납 기		납입년 월 일	
관	항	세항	목				
				기 납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계산 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입자 성명	
				납입자 주소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주시 하수도 공기업출납원							

공주시 공고 제2017-1767호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식품 가공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관리자 1명 지정, 기계장비 등 2명이상 인력 확보 등
- 가공제품의 원산지 확인, 품질 검사 등 지도감독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인원 : 11명 내외(소관부서장, 농산물가공전문가 등)
- 임무 : 가공센터 사용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다. 가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1조, 13조)

- 가공시설 사용 신청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주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우편번호 : 32528

전화: 041)840-8947/ FAX: 041)840-2345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시 및 출연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 1명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2명 이상의 인력을 편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가공시설 및 장비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가공센터 업무 과장
2. 농산물 가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가공시설 운영

제11조(가공시설 사용신청) ① 가공시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공교육 이수자로서 제3조제1호의 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 사용신청은 사용일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신청을 원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

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계의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방법 등은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가공시설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 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가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하게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제4장 위탁운영

제13조(위탁의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공센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가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가공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부자재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가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가공센터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연 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가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편입 토지 조서(변경)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당초	변경	증, 감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합계					4,608.4	5,864.3	1,255.9						
1	봉황동	376-1	학	43,448.5	237.7	237.7	-	교육과학기술부	국				
2	"	372-2	전	1,153.7	419.6	1,153.7	734.1	공주시	공				
3	"	371-5	대	259.2	259.2	259.2	-	공주시	공				
4	"	371-3	대	176.5	152.7	176.5	23.8	공주시	공				
5	"	371-2	대	146.1	146.1	146.1	-	공주시	공				
6	"	371-1	대	145.5	145.5	145.5	-	공주시	공				
7	"	366-2	대	1,447.3	452.6	452.6	-	공주시	공				
8	"	319	대	26,786.5	100.0	100.0	-	공주시	공				
9	"	368-1	전	41.3	41.3	41.3	-	공주시	공				
10	"	373-3	대	99.2	99.2	99.2	-	공주시	공				
11	"	373-2	대	264.5	264.5	264.5	-	공주시	공				
12	"	373-4	대	238.0	238.0	238.0	-	공주시	공				
13	"	373-1	대	2,047.9	1,655.4	2,047.9	392.5	공주시	공				
14	"	373-8	대	142.1	142.1	142.1	-	공주시	공				
15	"	373-9	대	254.5	254.5	254.5	-	공주시	공				
16	"	371-7	임	128.0		105.5	105.5	김공록 외2인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번길10 9,802호 (탄방동, 시티빌 4차)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1. 하수처리구역

- 가. 공 주 : 9.121km² 시 하수처리구역 내(동지역)
- 나. 신 관 : 1.518km²(금흥동, 송선동, 의당면 율정리, 수촌리, 청룡리 일원)
- 다. 유 구 : 2.581km²(석남리, 녹천리, 유구리, 백교리, 신영리, 만천리 일원)
- 라. 공 암 : 2.599km²(반포면 공암리, 봉곡리, 송곡리, 온천리, 일원)
- 마. 동학사 : 1.097km²(반포면 온천리, 학봉리 일원)
- 바. 소규모 : 3.783km²(쌍신동, 상왕동, 유구읍 작은골지구, 이인면 초봉지구, 탄천면 삼각지구, 계룡면 갑사.계룡문화.경천지구, 정안면 안골지구.용문지구.산수말지구.어물지구.보물지구.광정지구, 우성면 문화마을.강변말지구, 사곡면 계실.호계.화월.운암지구 일원)

※ 세부내역은 공주시하수도기본계획도서 참조

- 2. 부과대상 : 공공하수도에 오수를 하루 10m³이상 배출하는 모든 시설(건축)물
- 3.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 4. 부과금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결정금액 [별도계산]
- 5. 적용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결정(또는 협의)한 경우 기존 m²당 단가 적용

6. 오수발생량 : 00.0m³/일(별도산정,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환경부 제2007-178호)”

7. 단위단가 : 1,670,000원/m³

8.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산식) 일일오수발생량(m³/일) * 단위단가(원/m³) = 000원(천원이하 절사)

9. 기 타

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수도과 전화(☎041-840-8621)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17-179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에 따른 임대조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

공 주 시 장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	세대수	전용면적 (㎡)
공주시 관골2길35, 102동 1605호 (신관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0,000,000	500,000	17.7.25.	19.7.24.	1	59.971
공주시 신금1길 10, 207동 103호 (신관동, 주공2단지아파트)	3,000,000	320,000	17.6.7.	19.6.6.	1	39.72
공주시 반포면 길만길 3-4	50,000,000	-	17.8.1.	21.7.31.	1	71.61
공주시 우금티로 709-1, 206동 1302호 (옥룡동, 주공아파트)	3,000,000	300,000	17.8.9.	19.8.8.	1	41.85
공주시 우금티로 709-11, 201동 402호 (옥룡동, 주공아파트)	7,000,000	250,000	17.9.19.	19.9.18.	1	41.85
공주시 한적2길 51-14 (금흥동, 우남퍼스트빌)	50,000,000	350,000	10.9.2.	20.9.1.	12	59.4107 (86.1947)
	79,324,000	197,800			23	
	94,106,000	111,400			17	
	122,000,000	-			5	
	50,000,000	350,000			5	59.4107 (86.7692)
	79,324,000	197,800			10	
	94,106,000	111,400			10	
	122,000,000	-			3	
	50,000,000	350,000			5	59.4107 (88.3454)
	79,324,000	197,800			8	
	94,106,000	111,400			18	
	50,000,000	350,000			5	
	79,324,000	197,800			12	59.5100 (88.9234)
	94,106,000	111,400			8	

공주시 공고 제2017-1809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전문성 확보를 통한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 (안 제2조 제2항)**

- 現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전화: 041)840-8112 / FAX: 041)840-3719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2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공주시 공고 제2017-1811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계약조직 통합 과정에서 읍·면·동 재무관의 예산집행 관련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규칙과 관련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집행 관련 기준 조정
 -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는 계약업무에서 제1관서(읍·면·동만 제외) (안 제3조제5항)
-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제3조)
 -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
 - 가. 기업출납원(수도과장) : 500만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계약 처리
 - 나. 재무관(시민국장)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계약업무 처리

1.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21. (20일간)

2.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1일까지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66 FAX : 041-840-231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규칙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면·동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부터 적용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업무는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이 처리 한다.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④ (생략)</p> <p>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와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p> <p>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p> <p>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p>	<p>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면·동은 해당하지 아니한다.</p> <p>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p> <p>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p>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예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p> <p>1. ~ 2. (생략)</p> <p>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p>	<p>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p>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 7.(생략)

<신설>

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 7.(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제조, 구매 계약업무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이 처리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7-1828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의 선정절차 명료화 및 연임규정 완화로 유능한 변호사 확보
- 소송, 행정심판 등 법률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소송대응력 강화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선정절차 규정 명료화(안 제2조)
 -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절차의 명료화
- 고문변호사의 연임규정 완화(안 제3조)
 - 현행 한 차례만 연임하는 규정을 삭제
-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10조)

1.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6. (6일간)

2.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6일까지 공주시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36 FAX : 041-840-230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촉기간)”을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② (생 략)</p> <p>③ <u>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u></p> <p>④ <u>공개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고문변호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 할 수 있다.</u></p> <p>④ <u>고문변호사는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고문변호사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성, 전문성,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한다.</u></p> <p>⑤ <u>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가 다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u></p>

<p>⑤·⑥ (생략)</p> <p>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 연임</u>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제3조(임기) ① ----- ----- <u>연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월송동, 금흥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월송동, 금흥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 명칭 : 공주 월송지구 지구외 도로(대로2-1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명 칭	사 업 면 적 및 규 모			비 고
		연장(m)	노선폭(m)	면적(㎡)	
도시계획 시설	대로(2-1호)	653.0	30~74.0	20,100.9	
	소로(3-104호)	56.0	20.0	851.0	
	도시공원(5호)	-	-	4,345.0	
	완충녹지(2호)	-	-	5,630.0	
합 계		709.0		30,926.9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마. 사업기간 : 당초인가일(2015.09.15.)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변경인가일(2015.09.15.)로부터 ~ 2019년 06월 30일

바.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시설관리청인
 공주시에 공공시설(토지포함)을 무상으로 귀속함

사. 사용 또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 사용할 토지조서(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합계	기반시설				성명	주소	관리구분	주소	성명	
						대로	소로	공원	녹지						
합계					30,926.9	20,100.9	851	4,345	5,630						
1	신관동	36-1	전	1,330	125	25			100	송영식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08,103동301호(중동,성산마을카운티스)				
2	신관동	36-24	도	568	568	568				공	공주시				
3	신관동	36-13	임	5,045	1,135	44	402		689	송영식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08,103동301호(중동,성산마을카운티스)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지상권근저당	
4	신관동	산9-60	도	3,467	3,467	2,373		384	710	공	공주시				
5	신관동	5-22	도	58	58		58			공	공주시				
6	신관동	5-23	도	24	24				24	공	공주시				
7	신관동	5-19	도	922	25		25			공	공주시				
8	신관동	5-20	도	116	1		1			공	공주시				
9	신관동	22-209	임	1,359	193				193	국	기획재정부				
10	신관동	22-208	도	3,990	3,990	3,048		219	723	국	교육부				
11	신관동	36-3	전	3,378	178	97		81		송영식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08,103동301호(중동,성산마을카운티스)				
12	신관동	산9-8	임	23,648	2,296	96		2200		송영식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08,103동301호(중동,성산마을카운티스)				
13	신관동	40-8	수	1,405	188	158		30		국	국토교통부				
14	신관동	40-10	수	6	6			6		국	국토교통부				
15	신관동	40-7	수	225	39			39		국	국토교통부				
16	신관동	40-9	수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17	신관동	산9-103	수	630	630	232		398		국	국토교통부				
18	월송동	528-19	도	2,715	2,715	2,592			123	공	공주시				
19	월송동	528-6	임	1,468	235	27			208	김영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20	월송동	528-23	임	27	27	2			25	공	공주시				
21	월송동	528-22	임	22	8				8	공	공주시				
22	월송동	616	도	1,230.7	364.5	356.5			8	공	공주시				
23	월송동	528-18	도	15	15	15				공	공주시				
24	월송동	616-1	도	27.4	27.4	27.4				공	공주시				
25	월송동	534-16	임	8	5				5	공	공주시				
26	월송동	534-7	임	90	17				17	김용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수용 · 사용할 토지조서(2)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합계	기반시설				성명	주소	관리 구분	주소		성명		
						대로	소로	공원	녹지								
27	월송동	534-14	임	2	2			2	김용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 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 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28	월송동	528-17	임	929	875	215			660	송인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월드빌라트602호						
29	월송동	528-3	도	1,748	1,748				공	공주시							
									송인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월드빌라트602호					국	서대문세무서	압류
									이인희	미합중국 뉴욕주 루즈 벨트 아일랜드 메인스 트리트 546번지 309호							
									문인숙	미합중국 뉴저지주 포 트리 노스센트럴로드 2215번지 5비호							
									김인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제미슨 어거스타 드라 이브 1864							
									조화자	미합중국 뉴저지주 이 스트 브런즈윅 버팔로 런36							
									배인자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토론토 올튼 스트리트 71번지 214호							
									송인진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83 덕수연립 나-305							
									이인희	뉴욕주 루즈벨트 아일 랜드 메인스트리트 546 번지 309호							
									송인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월드빌라트602호					국	서대문세무서	압류
									송인진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83 덕수연립 나-305							
									배인자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토론토 올튼 스트리트 71번지 214호							
									조화자	미합중국 뉴저지주 이 스트 브런즈윅 버팔로 런36							
김인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제미슨 어거스타 드라 이브 1864																
문인숙	미합중국 뉴저지주 포 트리 노스센트럴로드 2215번지 5비호																
30	월송동	528-1	임	650	7			7	송인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월드빌라트602호							
31	월송동	570-22	구	225	196	14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 사용할 토지조서(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합계	기반시설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주소		성명
						대로	소로	공원	녹지						
32	월송동	534	임	224	85				85	윤석광	세종시 조치원읍 돌마루길 25				
33	월송동	534-4	임	5,950	1,187	340	295	552	김용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34	월송동	570-11	수	6	6				6	국	국토교통부				
35	월송동	528-9	도	81	81				81	공	공주시				
36	월송동	528-21	도	1,648	1,648	1,280			368	공	공주시				
37	월송동	570-12	수	21	21				21	국	국토교통부				
38	월송동	산42-7	수	46,465	18				18	국	국토교통부				
39	월송동	570-13	수	196	196	45			151	국	국토교통부				
40	월송동	산42-4	임	14,573	93			93	김용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41	월송동	산42-18	임	34	34	34			김용호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19 미성아파트 1-603					
									김용건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29					
									김온식	공주시 중동 147-91					
									김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902호					
김용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7 삼성래미안공덕3차 아파트 302-1103														
42	월송동	528-4	임	21	21	21			송인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9월드빌라트602호	국	서대문세무서	압류		
									문인숙	미합중국 뉴저지주 포트리 노스센트럴로드 2215번지 5비호					
									김인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제미슨 어거스타 드라 이브 1864					
									조화자	미합중국 뉴저지주 이스트 브런즈윅 버팔로 언36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고시 2014-58호 (2014.04.15.) 및 2015-168호(2015.12.01.)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편입토지의 세목조서 내용을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주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기성제 보강 및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유구천 유역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개 요 : 호안 및 축제 L=11.8km, 교량 3개소, 배수공 47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유구읍 만천리 유마교 ~ 신평면 동원리(유구천 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일 : 2014. 06. 01.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214-11 (214-2)	답	36	36	최대봉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9 정문아파트 502				
2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251-6 (251-3)	답	1	1	채익성	유구읍 석남리 270			축적등기	
3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290-6 (290-2)	답	7	7	유석창	유구읍 만천리 67			축적등기	
4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442-56 (442-56)	하천	365	365	남신희	신풍면 산정리 489				
5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444 (444)	하천	307	307	오학근	유구읍 유구리 407				
6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445 (445)	하천	1,461	1,461			홍훈표	유구면 녹천리		
7	공주시유구읍 만천리	447 (447)	임	3,385	3,385			이제형		토지대장 (01)사정	
8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446-4 (446-3)	하천	1,013	1,013	남학원	신풍면 산정리 261 지분율 1/3				
9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446-4 (446-3)	하천	1,013	1,013	남학원	신풍면 산정리 261 지분율 1/3				
10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07-1 (507)	하천	223	223			백석만	원동	토지대장 (01)사정	
11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08-1 (508)	하천	75	75	남정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82				
12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08-2 (508)	하천	39	39	남정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82				
13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09 (509)	하천	279	279	이상옥	신풍면 동원리 451				
14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09-2 (509-2)	하천	122	122	이상옥	신풍면 동원리 451				
15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1 (511)	하천	271	271			양기환	동원리	토지대장 (01)사정	
16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2 (512)	하천	152	152			양사환	동원리	토지대장 (01)사정	
17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3 (513)	하천	79	79			한동수	유구읍 유구리		
18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4 (514)	하천	56	56	유승일 한상기 한준희	캐나다 문타리오주 미시시우가 조이마드 라이브 86-111 지분율 2/208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8 덕현아파트 111-303 지분율 13/208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8 덕현아파트 111-303 지분율 13/208				
19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5 (515)	하천	145	145			김교학	동원리	토지대장 (01)사정	
20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6 (516)	하천	516	516			양극환	동원리	토지대장 (01)사정	
21	공주시신풍면 동원리	518 (518)	하천	350	350			양극환	백흥리	토지대장 (01)사정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또 는명칭	
22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519 (519)	하천	2,026	1,820	채근석	공주시 신품면 동원리471					
23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519 (519)	하천	2,026	206	채근석	공주시 신품면 동원리471					
24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521 (521)	하천	321	321			양사환	공주시 신품면 동원리		토지대장 (01)사정	
25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523-1 (523)	하천	918	918	채근석	공주시 신품면 동원리471					
26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523-1 (523)	하천	304	304	채근석	공주시 신품면 동원리471					
27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222 (222)	하천	1,415	1,415	구중서	공주군 신품면 만천리 32					
28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222 (222)	하천	2,810	2,810	구중서	공주군 신품면 만천리 32					
29	공주시신품면 동원리	249 (249)	하천	2,231	2,231			양주환	신품면 배롱리		토지대장 (01)사정	
30	공주시유구읍석남리	316-3 (316-2)	답	28	28	박영화	유구읍 녹천리 37 유구연립 나-202	문덕영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61-4라이프콤 비아파트-2108		근저당 설정	
31	공주시유구읍석남리	317-7 (317-2)	답	48	48	박영화	유구읍 녹천리 37 유구연립 나-202	문덕영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61-4라이프콤 비아파트-2108		근저당 설정	
32	공주시유구읍유구리	571 (571)	하천	2,192	2,192			김교응	남방리		토지대장 (01)사정	
33	공주시신품면산정리	2 (2)	진	1,715	1,715			조성재	신품면 동원리 467			
34	공주시신품면산정리	3 (3)	답	304	304			조덕재	신품면 동원리 413			
35	공주시신품면산정리	27-4 (27-2)	답	97	97	이상욱	공주군 신품면 동원리 470	조명재	신품면 동원리 413 신품면 동원리 295 신품면 동원리 372			
36	공주시신품면산정리	51-3 (51-1)	진	26	26			조명재	신품면 동원리 467			
37	공주시신품면산정리	51-4 (51-2)	답	1,014	1,014			조명재	신품면 동원리 413 신품면 동원리 295			
38	공주시신품면산정리	369 (369)	하천	1,002	1,002			이병필	원동		토지대장 (01)사정	
39	공주시신품면산정리	371-1 (371-1)	하천	67	67			장덕초	가곡리		토지대장 (01)사정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73 (373)	하천	36	36	유원형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780					
41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75 (375)	하천	453	127			이준구 이동 조성재 이필승 남정일 이용규 이준구 이동 조성재 이필승 남정일 이용규	원동 원동 원동 신음리 산음리 원동 원동 원동 산음리 산음리	토지대장 (01)사정		
42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75 (375)	하천	453	326			이동 조성재 이필승 남정일 이용규	원동 원동 원동 산음리 산음리	토지대장 (01)사정		
43	공주시신룡면산정리	412-1 (412-1)	하천	349	11	남정팔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82					
44	공주시신룡면산정리	412-1 (412-1)	하천	349	338	남정팔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82					
45	공주시신룡면산정리	15-1 (15-1)	답	98	98	유영호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73					
46	공주시신룡면산정리	59 (59)	하천	922	922	유승일	케나다 문타리오주 미시시우가 조이마드 라이브 86-111 지분율 2/208					
47	공주시신룡면산정리	60 (60)	하천	1,402	1,402	유승일	케나다 문타리오주 미시시우가 조이마드 라이브 86-111 지분율 2/208					
48	공주시신룡면산정리	61 (61)	하천	2,595	2,595	구중서	공주군 신룡면 만천리 32					
49	공주시신룡면산정리	106-1 (106-1)	하천	3,139	1,185	오만윤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70					
50	공주시신룡면산정리	106-1 (106-1)	하천	3,139	1,954	오만윤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70					
51	공주시신룡면산정리	108 (108)	하천	1,408	1,408	남관희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70					
52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30-3 (330-1)	답	73	73	양영우	신룡면 동원리289-3	청주비과편 매주식회사 신룡농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6-5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산정리 72	17년6월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 결 정(2017타경1525)	근저당권자	
53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30-4 (330-1)	답	181	181	양영우	신룡면 동원리289-3	청주비과편 매주식회사 신룡농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6-5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산정리 72	17년6월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 결 정(2017타경1525)	근저당권자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 영칭	주소	성명또 는 영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4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20 (220)	하천	116	94	남가희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82				
55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20 (220)	하천	116	22	남가희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82				
56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21-1 (221-1)	하천	83	83	남관희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256				
57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25 (225)	하천	2,026	2,026			문현상	경성부 무교정 11	토지대장 (01)사정	
58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28-2 (228-2)	하천	16	16	배기호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34				
59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30-1 (230-1)	하천	5,261	3,075	양동진 양재구 양극환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32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33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507 지분율 1/3				
60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30-1 (230-1)	하천	5,261	2,186	양동진 양재구 양극환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32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333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507 지분율 1/3				
61	공주시신룡면동원리	159 (159)	하천	1,934	1,475	김봉환	경성부 익선정 166-39				
62	공주시신룡면동원리	159 (159)	하천	1,934	459	김봉환	경성부 익선정 166-39				
63	공주시신룡면동원리	199-1 (199-1)	하천	301	301			윤창구	청양군 목면 안심리	토지대장 (01)사정	
64	공주시신룡면동원리	199-4 (199-4)	하천	292	292	김옥현	대전시 동구 인동 211-5	서울시송파 구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06년11월22일 압류(민원봉사 과-58008) 15년9월9일 압류(세무2과- 9074호)		
65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31 (231)	하천	1,448	1,448			문희상	경성부 무교정 11	토지대장 (01)사정	
66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33 (233)	하천	72	72			정주식	동마리	토지대장 (01)사정	
67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34 (234)	하천	625	625			정주현	동마리	토지대장 (01)사정	
68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50-6 (250-6)	제방	303	303	임용래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123				
69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55 (255)	임	110	110	오형윤	공주시 신룡면 산정리 70				
70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56 (256)	하천	26	26	신상철	공주시 신룡면 동원리 284				
71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2 (262)	하천	741	741			양재환	동마리	토지대장 (01)사정	
72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4 (264)	임	1,111	1,111			오한영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2동2호	토지대장 (01)사정	
73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5 (265)	하천	1,269	305	오한영	공주군 신룡면 산정리 2동2호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4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5 (265)	하천	1,269	964	오한영	공주군 신룡면 신정리 2동2호					
75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6-1 (266)	하천	5,576	5,576	유근옥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66					
76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72 (272)	하천	2,258	2,258	성낙원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504					
77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73 (273)	하천	3,630	3,630			유석영	백룡리	토지대장 (01)사정		
78	공주시신룡면백룡리	749-4 (749-2)	답	142	142	양상호 양광진 양태영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117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117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289 지분율 1/3					
79	공주시신룡면백룡리	750-3 (750-1)	답	144	144	양상호 양광진 양태영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117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백룡리 117 지분율 1/3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289 지분율 1/3	서울시동대 문구정		06년12월22일 압류(교통지도 과-21688호)양광진분 1/3		
80	공주시신룡면산정리	330-7 (330-1)	답	29	29	양영우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동원리 289-3	양영우	신룡면 동원리289-3		17년6월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 결 정(2017타경1525) 근저당권자	
81	공주시신룡면동원리	266 (266)	하천	74	74	유근옥	공주군 신룡면 동원리 66					
82	공주시유구읍유구리	550-10 (550-1)	임야	115	115	노상규 이원박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 봄12길 72, 401 호(신기동) 지분율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855 지 분율 1/2	당진수협협 동조합 미아자와마 사오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음 내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200 대림센터이즈 2차 602호(중동)	근저당 설정 이원박지분 1/2 기등기권자		
83	공주시유구읍유구리	550-11 (550-9)	임야	193	193	노상규 이원박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 봄12길 72, 401 호(신기동) 지분율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855 지 분율 1/2	당진수협협 동조합 미아자와마 사오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음 내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200 대림센터이즈 2차 602호(중동)	근저당 설정 이원박지분 1/2 기등기권자		
84	공주시유구읍유구리	237-16 (237-6)	임야	46	46	노상규 이원박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 봄12길 72, 401 호(신기동) 지분율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855 지 분율 1/2	당진수협협 동조합 미아자와마 사오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음 내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200 대림센터이즈 2차 602호(중동)	근저당 설정 이원박지분 1/2 기등기권자		
85	공주시유구읍유구리	237-17 (237-12)	임야	7	7	노상규 이원박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 봄12길 72, 401 호(신기동) 지분율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855 지 분율 1/2	당진수협협 동조합 미아자와마 사오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9(음 내동)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200 대림센터이즈 2차 602호(중동)	근저당 설정 이원박지분 1/2 기등기권자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가격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37	축사	파이프스레트 및 함석	84.4	m ²	최친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23-23				
	“	“	창고	파이프함석	71.8	m ²	최친진	“				
	“	“	퇴비사	파이프천막	24	m ²	최친진	“				
	“	“	창고	목조스레트	11.3	m ²	최친진	“				
	“	“	창고	벽돌함석	3.8	m ²	최친진	“				
	“	“	창고	파이프	45	m ²	최친진	“				
	“	“	창고	파이프	24	m ²	최친진	“				
	“	“	차양	썬라이트	40.5	m ²	최친진	“				
	“	“	정화조		1	식	최친진	“				
	“	“	견사	철재	18	m ²	최친진	“				
	“	“	담장	철망	75	m	최친진	“				
	“	“	동산이전비	냉장고, 벚짐 등	1	식	최친진	“				
	“	“	감나무		13	주	최친진	“				
“	“	축산보상	한우9마리	9	마리	최친진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2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21 (산성동)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0.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신성동 31-64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21 (신성동)	2017.10.26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3-6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길 18-4 (금성동)	2017.10.26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상충동 807-11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길 63-1 (상충동)	2017.10.26	신축	20100112	왕촌이라 불리던 하천을 타고 가는 길이라 왕촌길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석면동 153-7, 153-12	충청남도 공주시 금박로 509 (신면동)	2017.10.26	신축	20090825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금충동 228	충청남도 공주시 금충동 5 (금충동)	2017.10.26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104-1	충청남도 공주시 송산길 10 (월미동)	2017.10.26	신축	20100112	송산들이 많이 산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277-2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길 262 (석장리동)	2017.10.26	신축	20110630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8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로 25	2017.10.26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인흥리 8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인흥로 434-41	2017.10.26	신축	20100112	구개리와 인흥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대산리 동산리 106	충청남도 공주시 대산리 동산로 54	2017.10.26	신축	20100202	위당방 아랫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달방이라 한다하는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정치리 33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정치로 282	2017.10.26	신축	20100112	명곡과 병인의 두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78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로 138	2017.10.26	신축	20100112	마화위룡촌의 지형이라 인접한 크게 통하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영리 79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영로 347-9	2017.10.26	신축	20100112	내흥리의 예전 지명인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리라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항리 511-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항로 364-7	2017.10.26	신축	20100112	경천리에서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리라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13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곡로 20	2017.10.26	신축	20100112	평범한 밭이 많아 평전만이라 불리므로 마을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3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로 25	2017.10.26	신축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598-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로 60-48	2017.10.26	신축	20100112	도로의 끝자리에 도매물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도매촌을 향하는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17-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로 162	2017.10.26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59-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로 16	2017.10.26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59-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로 16-1	2017.10.26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5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로 16-2	2017.10.26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65, 88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로 285-16	2017.10.26	신축	20100112	신남동 전마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67-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로 5-6	2017.10.26	신축	20100112	유계리를 대표하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57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로 1127-16	2017.10.26	신축	20100112	신남동 전마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5	충청남도 공주시 영안면 대산리 665-2	충청남도 공주시 영안면 대산로 75	2017.10.26	신축	20100202	옛날에 오지 그곳을 만들던 궁기점이 있었다 하여 오지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76-3, 76-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로 439-111	2017.10.26	신축	20100112	목성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불충족하여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9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로 36-8	2017.10.26	신축	20100112	해당부터 귀산리 전체를 상신이라 불렀다 하여 상신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2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34 (교동)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0.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2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09 (신관동) 외 1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0.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53-7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09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53-12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416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8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요골길 25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5-9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35	2017.10.26	건물말소	
5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5-32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37-8	2017.10.26	건물말소	
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3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솟골길 25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39, 238, 38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솟골길 23	2017.10.26	건물말소	
8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1-2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40	2017.10.26	건물말소	
9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1-11, 241-3, 434-4, 434-7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40-2	2017.10.26	건물말소	
10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5-14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41	2017.10.26	건물말소	
11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18-15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57-1	2017.10.26	건물말소	
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10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달밭1길 54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67-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길 5-6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367-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길 5-8	2017.10.26	건물말소	
15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31-64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21	2017.10.26	건물신축에 의해 말소	